의 안 번 호	제73호
의결 연월일	2018. 9. 10.

2018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8월 28일 논산시장

나. 회 부 일 자: 2018년 8월 28일

다. 상 정 일 자: 2018년 9월 10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 설명요지(제안 설명자 : 회계과장)

가. 제안이유

O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에 따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2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[일반회계]

- 행복공동체 노인공동작업장(노인회관)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· 강산동 666번지 495㎡(건물)
- 부적면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
 ・부적면 마구평리 50-1,50-14번지 470㎡(토지),1,100㎡(건물)

○ 공유재산 교환

- ·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750외 17필지 11,262m²(토지) 취득
- ·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149-3외 13필지 11,642㎡(토지) 처분
- ·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741외 2필지 698m²(토지) 취득
- ·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157-13번지 698m²(토지) 처분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 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